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희생자의 범위 확대 등 〉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14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4
-----------------	---

1. 목적 규정 및 국가의 책무 규정 정비, 공동체 회복 지원 의무 강화	4
2. 제주4·3사건 정의 변경 및 희생자 범위 확대	12
3.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 박탈 근거 마련	21
4. 피해신고 상시화 및 신청인의 지위 승계 근거 마련	24
5. 제주4·3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신설	28
6. 특별재심 청구권자 확대	33
7. 직권재심 청구사실 통보 규정 마련	38

[참고] 제주4·3사건 개요 및 희생자·유족 결정 현황

I.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춘생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18.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9.

2. 제안이유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21년 전부개정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했으나 ‘소요사태’로 명시된 사건의 정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하는 상황임.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왜곡·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조항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항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책무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률안 내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화합과 치유라는 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제주4·3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 다. 화합과 치유를 위한 노력과 교육과 홍보,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교섭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서훈을 취소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 라. 위원회의 항시 접수를 통해 주기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 전에 사망하여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바. 제주4·3희생자와 유족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 왜곡으로 상처받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2항 신설)
- 사. 특별재심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
- 아. 직권재심 청구 과정에서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그 유족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II. 검토의견

1. 목적 규정 및 국가의 책무 규정 정비, 공동체 회복 지원의 무 강화(안 제1조, 제4조 및 제22조)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치유”를 추가하고(안 제1조), 국가의 책무 규정에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치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안 제4조제1항), 제주4·3사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교섭 등 노력을 하여야 할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안 제4조제2항 신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화합과 치유 및 인권신장과 민주발전</u> -----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u>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u>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u>국민화합</u>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 <u>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u> ----- ----- ----- ----- <u>화합과 치유</u> ----- ----- <u>를</u> -----.

<u><신 설></u>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 4·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내 및 국제사회와 교섭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 ----- -----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

1) 목적 및 책무 규정에 “치유”, “진상규명” 등 추가

개정안 제1조는 목적 규정에 “치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치유라는 정책적 과제가 이 법의 입법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개정안 제4조제1항은 이같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져야 하는 책무에도 “치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을 추가하여 국가 책임 하에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제23조¹⁾에 따른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근거 규정에 “치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법에서 “보상”이나 “명예회복”에 비하여 “치유”가 가지는 의의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치유라는 정책적 과제를 동법의 목적 규정과 국가의 책무 규정에 명확하게 밝히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고 봄.

또한, 현행법 제5조2)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발간,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사무를 수행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행정주체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가의 책무에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발간 및 사료관(史料館) 구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12.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⑨ (생략)

안의 입법 취지 역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치유”는 현행 목적 규정과 국가의 책무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인권신장”,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과 같은 궁극적인 목적에 비하여 하위 개념 내지 수단적 개념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상호 병렬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이에 부합되도록 목적 규정과 책무 규정의 문언을 일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³⁾

한편, ‘국민화합’이라는 표현을 ‘화합과 치유’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이 법의 목적에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⁴⁾에서도 모두 “국민화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2007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와 조사보고서 작성이 검토되었으나 추가 진상조사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과 함께 “치유”를 통해 “인권신장”,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3·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점에서,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책무 규정에 “교육과 홍보 노력” 추가 등

개정안 제4조제2항은 제주4·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교섭 등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림으로써 제주4·3사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교육과 홍보가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⁵⁾

또한, 개정안 제22조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사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실체적인 실행 의무로 강화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을 강제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을 통하여 제주4·3사건에 관한 국내외의 교육·홍보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책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유도적 성격을

5) 개정안 제4조제2항은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교섭 등 노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가진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4조제2항과 같이 교육이나 홍보 등 구체적인 사업적 범주에 해당하는 사항을 책무에 신설하는 것은 법제 원칙상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22조도 법체계상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제22조~제25조)]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책무 규정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보이는 바, 동일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교섭 등은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의 개발·시행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재정 투입에 대한 추계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4조제2항 및 제22조의 내용은 현행법 제24조⁶⁾ 등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에 추가되거나⁷⁾ 별도 조문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⁸⁾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입법

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사료관 건립
3.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4.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7) 현행법 제24조에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 외에 “국내외적 교섭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8)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는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의 개발·시행에 관한 근거를, 같은 법 제32조는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 등 사업

적 실익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제24조에 따라 교육·홍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국비 지원을 통해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에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위한 국내외 교섭”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입법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4조 제4호에 ‘홍보’를 추가하여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사업의 개발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은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의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안산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4·3사건 교육 및 홍보 관련 국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2024년도 예산액	비고
제주4·3희생자 추념식		1,400	
	- 제76주년 추념식 개최 - 국가문화제 추진 (4·3국민대토론회, 4·3전국화·세계화 홍보사업, 팸 투어, 문화예술축전 등)	400 1,000	
제주4·3평화재단 출연사업		4,212	
	- 추가진상조사	600	
	- 희생자추모사업 (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200	
	- 유족복지사업 (유족진료비 지원, 4·3어버이상, 생존희생자 위로사업 등)	2,282	
	- 문화학술사업 (4·3평화포럼, '4·3과 평화' 발간, 연구 공모사업 등)	890	
	-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평화네트워크 구축, 학생 아카데미,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240	
4·3전국민 바로알리기 사업	-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 신청서 작성 등)	70	

※ 교육·홍보 관련 사업(2,200백만원) : 국가문화제 추진, 문화학술사업,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기록유산 등재)

※ 자료: 행정안전부

2. 제주4·3사건 정의 변경 및 희생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에 대한 저항과 탄압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변경하고(안 제2조제1호), 희생자의 범위를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연행 및 구금된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 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에 대한 저항과 탄압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	2.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사람, 연행 및 구금된 사람 또는----- -----

된 사람을 말한다. 3. ~ 5. (생략)	----- -----. 3. ~ 5. (현행과 같음)
---------------------------------------	--

1)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 변경

개정안 제2조제1호는 제주4·3사건을 정의함에 있어서 사건의 발생 원인과 가해 주체 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소요사태”와 같이 의미와 해석에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4·3사건의 정의⁹⁾를 일부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정의 규정 비교]

개 정 안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에 대한 저항과 탄압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9)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536.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정의는 진상규명의 범위, 피해자 및 유족의 범위, 보상, 기념사업 등 후속 조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미칠 수 있는 입법적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건의 역사적 의의나 성격에 대한 법적 규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경하려는 정의 규정의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동법의 목적이 과거사 사건에 대한 역사적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판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상 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볼 때¹⁰⁾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중립적·균형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를 현행법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개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하게 정의 규정을 변경하려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¹¹⁾¹²⁾ 공청회(2020.11.12.) 개최를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

10) “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서문)

11)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2388호, 2020년 7월 27일 발의

12) 동 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에 의한 민

자의 의견 수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정의 규정 변경 대신 기존 법률의 정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음.

[공청회 당시 제주4·3사건 정의 관련 진술 개요]

“소요사태”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독해방식에 따라 4·3사건의 책임을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제주도민에게 전가하고 3·1절 발포사건으로 인해 비등점으로 이른 제주도 사람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국가폭력을 순치하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제시된 바 있고,

반면, “봉기”라는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봉기라는 것은 어떤 주도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고 가담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략) 4월 3일에 발생한 사건 이후에 장기간 동안 희생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희생된 제주도의 주민들을 봉기의 가담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수적인 피해자로 볼 것인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봉기라는 정의는 과연 누구의 시각에서 성격을 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소요사태와 봉기는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봉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고 소요사태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음.

2) 희생자의 범위 확대

개정안 제2조제2호는 “희생자”의 정의를 변경하여 연행 또는 구금된 사망을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범위를

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하였음.

확대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16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제19조),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제23조), 기념사업(제24조) 등 피해의 전보, 명예회복 및 치유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희생자 14,822명, 유족 110,494명 등 총 125,316명이며,¹³⁾ 2022년 1월 11일 신설된¹⁴⁾ 보상 근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접수와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접수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6차로 나누어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말 기준으로 8,05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3,840명에 대하여 3,370억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보상금 신청 기간 및 신청 인원]

구 분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신청기간	'22.6.1.~ '25.5.31.	'22.6.1.~ '22.12.31.	'23.1.1.~ '23.6.30.	'23.7.1.~ '23.12.31.	'24.1.1.~ '24.6.30.	'24.7.1.~ '24.12.31.	'25.1.1.~ '25.5.31.
신청인원*	14,822명	2,117명	2,500명	2,796명	2,660명	2,689명	2,060명

* 7~8차('23.1.~6.) 희생자·유족 신고에 따른 희생자 추가 결정으로 보상금 지급신청 공고('22.5.20.) 당시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증가될 수 있음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과거사 사건을 규율하는 법률에 있어서 “희생자”에 대한 정의는 사

13)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구분	희 생 자					유 족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인원(명)	14,822	10,593	3,698	213	318	110,494

자료: 행정안전부

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745호, 2022. 1. 11., 2022. 4. 12.시행)

건에 대한 법 적용에 미치는 입법적 영향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1) “연행 및 구금된 사람”을 추가하고 있는 사항, (2)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를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로 변경하는 사항 등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각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연행 및 구금된 사람” 추가

연행이나 구금은 형사절차상 행해지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적 처분으로서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희생자로 규정되어 있는 수형인(受刑人)과 같이 형의 선고에 이르지 않는 않았으나 신체적 자유 침해라는 피해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연행 및 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자”의 범위에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한국전쟁 전후의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¹⁵⁾에는 “연행 및 구금된 사람”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고 희생자의 정의를 동법과 같이 사망자, 수형자, 행불자, 후유장애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심사 시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1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를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로 변경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를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법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등으로 희생자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제주4·3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제주도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¹⁶⁾ 이를 “관련성”이라는 요건으로 변경하게 되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수형인이 된 경위와 관련하여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와 시간적·공간적 범위 등 “희생자”의 기준이 현행법에 비하여 확장될 것으로 보임.

다만,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그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희생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법률 규정만으로는 희생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따른 입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희생자 또는

16) 최근 2024.1.1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시간적 범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여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에서 폭발물로 인해 숨진 어린이 2명을 제주4·3희생자로 최종 결정한 바 있음.

관련자의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관련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과거사 관련 법률상 “관련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행법 제16조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수형인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적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임.

희생자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은 2024년 현재 7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의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주4·3사건 당시 연행되었거나 구금된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 부재로 인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희생자의 범위를 추상적 개념의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희생자의 범위 확대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의 확대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참 고] 과거사 사건 희생자 또는 관련자의 범위 입법례

법률제명	시기	희생자 또는 관련자의 범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7.3.1.~'54.9.24.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①사망·행방불명 ②후유장애 ③수형인(受刑人)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8.10.19.~'55.4.1.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①사망·행방불명 ②후유장애 ③수형인(受刑人)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50.7.25.~'50.7.29.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①사망·행방불명 ②부상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51.2.9~'51.2.11.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①사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64.3.24~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사망·행방불명 ②상이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③질병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④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79.10.16.~'79.10.20.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①사망·행방불명 ②상이 ③질병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 ④수배·연행·구금 ⑤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79.12.12.와 '80.5.18. 전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사망·행방불명 ②상이 ③질병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 ④성폭력 피해 ⑤수배·연행·구금 ⑥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

3.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 박탈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상훈 박탈) 정부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공로만으로 받은 상훈은 「상훈법」에 따른 서훈의 목적¹⁷⁾과 원칙¹⁸⁾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상훈에 해당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동일한 내용의 입법례¹⁹⁾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17) 「상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다만, 개정안은 서훈 취소 등의 요건을 “오로지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조 제1호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제주4·3사건을 진압하였다는 것은 그 행위의 형태나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상훈 박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그 자체로 진압의 대상으로 이를 진압한 행위의 구체적 형태나 범주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나, 포괄적으로 제주4·3사건을 진압하였다는 것은 그 구체적 형태나 범주를 상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임.

서훈 취소와 훈장 등 환수는 불이익 처분으로, 「상훈법」에 따른 취소 요건²⁰⁾ 외에 특별법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입

1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20)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개정안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와 훈장 등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과 범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받은 상훈과 그 상훈에 대한 사후적인 박탈은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서훈 취소가 「상훈법」에 따른 서훈의 목적과 원칙,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상훈 박탈의 근거가 되는 요건의 내용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란 시기를 전후하여 발생함에 따라 서훈 관련 사실의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등 상훈 박탈을 규정한 과거사 관련 입법례를 고려하여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임.

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4. 피해신고 상시화 및 신청인의 지위 승계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9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등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전에 사망한 경우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 ----- ----- <u>항시</u> <u>접수할</u>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2조의2(신청인의 지위 승계) 제12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에</u> <u>관한 신청인이 그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전에 사망하여 더 이상</u> <u>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u> <u>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u>

1) 피해신고 상시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법 제정(2000. 1. 12.) 이후 현재까지 시행령 제9조제2항²¹⁾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 기간의 신고 기간을 설정해 나

가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실시되어 왔고,²²⁾ 2024년 6월말 기준 희생자 14,822명, 유족 110,494명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8차 신고(2023.1.1.~6.30.)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이 진행 중에 있음.

개정안 제9조제1항은 이처럼 부정기적·간헐적인 신고기간의 부여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적정한 수행 등 이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최근 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따른 접수 건수가 19,559건으로 7차 신고 당시의 접수 건수 32,615건에 비해 6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신고 접수 건수가 2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피해신고 상시화는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신고의 상시 접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심사·결정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에서 심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정사무 수행 체계가 이를 뒷받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2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③~⑤ (생략)

22)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 현황(2024년 6월말 현재)

구분	기 간	구분	기 간	구분	기 간
1차	'00. 6. 8.~'01. 1. 4.	2차	'01. 3. 2.~'01. 5.30.	3차	'04. 1. 1.~'04. 3.31.
4차	'07. 6. 1.~'07.11.30.	5차	'12.12. 1.~'13. 2.28.	6차	'18. 1. 1.~'18.12.31.
7차	'21. 1. 1.~'21. 6. 30.	8차	'23. 1. 1.~'23. 6. 30.		

※ 8차 추가신고 접수 결과 : 총 1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8,825명)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추가신고 수요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를 상시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는 8차 접수 신고분(19,559건)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신청인 지위 승계 근거 마련

개정안 제12조의2는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제20조에 따른 실종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제21조의2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와 관련하여²³⁾ 당초 신청인이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다수가 고령이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례가 복잡·다양하여 신청에서부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초 신청인이 사망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다른 신청권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하나 신청기간('24.9.1.~'26.8.31. 예정) 내에 재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0164호, 2024.1.30., 2024.7.31.시행)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혼인신고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등으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의 특례, 입양신고의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는 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²⁴⁾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 특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24)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의 경우 신청권자는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1명으로 한정되어 다른 신청권자가 부존재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제주4·3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신설(안 제13조)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신설>	제13조(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 -----대한----- -----각 호의 방법으로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은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금지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현행 금지규정이 벌칙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나, 진상조사 결과 부인 또는 왜곡이나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행위 등을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불문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등 명예훼손에 관한 죄로 해당 법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

개정안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성하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가 예술·학술, 연구·학설 등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둬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입법례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25)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음.

2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과거사 사건 관련 유사 입법례,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양태와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벌의 신설 여부와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다만,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와 달리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여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른 경우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고의(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 외에 목적 의식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에 있어 보다 엄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 의식을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개 정 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u>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u>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각 호의 방법으로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둘째, 개정안은 본 범죄의 구성요건을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제주4·3사건”에 있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외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범죄의 구성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죄는 법문의 정비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희생과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행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항으로 개정실익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 고] 명예훼손에 관한 죄

「형법」 : 명예훼손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 사자명예훼손죄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특별재심 청구권자 확대(안 제14조제1항)

개정안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이나 유족의 상속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특별재심) ① <u>희생자로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u>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u>사람으로</u>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재심) ① <u>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u> ----- ----- ----- <u>사람</u> <u>또는 그 유족이나 유족의 상속인으</u> <u>로</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대하고 있는 바, (1) “희생자” 요건을 삭제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

정판결을 받은 사람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2)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외에 그 유족과 유족의 상속인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가하고 있음.

각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상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충족하여야 하는 “희생자” 요건을 삭제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를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로 변경하면 특별재심의 대상이 되는 당초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수형인 명부의 등재와 제주4·3사건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요건이 완화되어 특별재심 청구권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희생자 요건 삭제 시, 재심청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일반재판도 전부 무효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그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특별재심 청구권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에 따라 법률 규정만으로는 특별재심 청구권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별재심 청구권자의 요건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개정에 따른 입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특별재심 청구권자를 개정안과 같이 “관련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²⁶⁾ 및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²⁷⁾에 따

른 특별재심에 관하여 적용한 “관련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외의 추상적 개념의 피해자까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특별재심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며, 광주고등검찰청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은 희생자 문구 삭제 시 포괄적 재심청구 인정에 따른 일반 재판 무효로 4·3사건 당시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별재심의 요건으로서 “관련하여”의 의미나 구체적인 한계가 불분명하므로²⁸⁾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2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별재심)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効)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27)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재심) ①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28) 남로당 간부의 범행, 혼란을 틈 탄 살인·방화, 그 밖에 제주도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개인적 범행도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둘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등 관련자료로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외에 “그 유족이나 유족의 상속인”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가한 것은 당사자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이나 유족의 상속인으로 하여금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등 관련자료로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판결의 피고였던 당사자 또는 수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들이 사망한 경우 등 특별재심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제상으로도 동법 제14조제4항²⁹⁾ 및 「형사소송법」 제424조³⁰⁾ 및 「군사법원법」 제473조에 따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30)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행정안전부 및 광주고등검찰청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도 동일한 입장임.

7. 직권재심 청구사실 통보 규정 마련(안 제15조제2항)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 권고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한 경우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그 유족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u>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따라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그 유족 등에게 서면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개정안 제15조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의 권고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그 유족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재심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족 등의 알권리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 보임.

다만, 현재도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은 직권재심을 청구한 경우 해당 사실을 피고인 등에 문자 메시지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는 바, 이와 별도로 서면으로 직권재심 청구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적절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도 직권재심 청구 사실을 피고인 등에 안내(문자)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

제주4·3사건 개요 및 희생자·유족 결정 현황

□ 제주4·3사건 정의 ※「4·3사건법」 제2조, '00.1.12. 제정

-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7년 7개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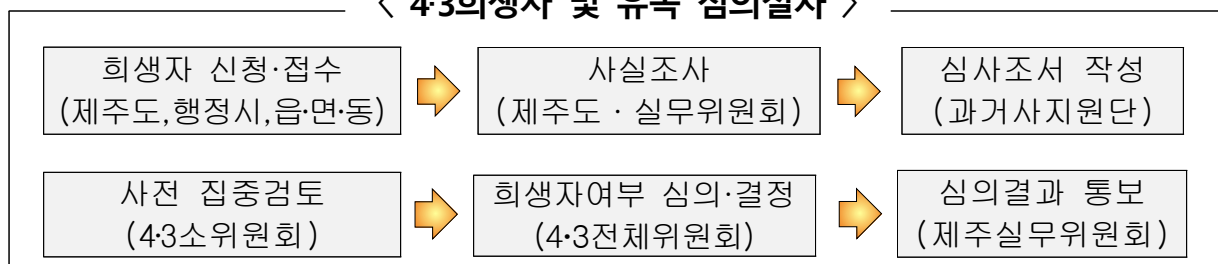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활동

- '00. 1. 12. 여야 합의로 「4·3사건법」 제정
- '00. 8. 28. 제주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발족
 - 총 25명(정부위원 7, 민간위원 17)
- 주요활동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심의·결정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지원
 -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적지 복원사업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 심의절차

〈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절차 〉



〈희생자·유족 범위〉

(희생자) 제주4·3사건으로 사망·행방불명된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유 족)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결정현황

- 총 125,316명 결정(희생자 14,822, 유족 110,494)('24.6.30. 기준)